

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 감염예방교육 지침

<2009. 7. 1. 시행>

□ 근거규정 : 의료법 제16조

□ 검토배경

- ‘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’ 제8조 ‘감염예방 교육’과 관련하여 교육 방법, 내용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내실화

□ 교육목적

- 세탁물 처리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통해 세탁물로 인한 감염^{*)}을 사전에 차단하고, 오염물의 철저한 보관·세탁·관리 등 준수사항 숙지 유도

* 감염 :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매우 작은 크기의 미생물들이 신체 내부나 표면으로 침입하여 증식하는 상태

□ 용어정의 :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2조

- “의료기관세탁물” :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은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세탁물
- “오염세탁물” : 세탁물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

□ 교육 대상자 : 세탁물 처리에 종사하는 자

□ 교육시간 : 연4시간 이상

□ 교육교재

- 의료기관세탁물처리규칙 (보건복지가족부령)
- 병원감염예방관리지침 (2005. 보건복지부)
- 대한감염학회,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발간 학회지 등 전문 학술내용

□ 교육방법

- 집합 교육 : 법령위반자 및 신규업자(신규 종사자 포함)
- 교육자료 제공(우편) 또는 인터넷 교육 : 기타 (단, 집합교육을 원하는 자는 제외)

□ 교육이수 확인방법

- 집합 교육
 - 현장에서 자율 평가 원칙
- 우편 제공 교육
 - 평가문항을 동봉하고, 답안지를 회수하여 채점결과 개별 통보
- 인터넷 교육
 - 개인별 ID, 비밀번호를 통해 로그인 기능 부여
 - 30~60분 단위로 4~8강좌로 교육 내용 구성
 - 매 강좌 종료시 핵심 내용에 대한 평가 문항 첨부

□ 교육결과

-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는 해당 교육결과 기록 및 유지

□ 지도·점검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적정 교육이수 여부 등을 지도·점검

□ 행정처분

-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세탁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⇒ 시정명령
- 상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⇒ 업무정지 15일

□ 참고사항 (의료기관세탁물처리규칙 개정 예정)

- 수술시 사용되는 '외과용 패드(surgical pad)'는 재사용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지 말 것
- 의료기관은 오염세탁물 중 전염병의 전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에 대하여는 소각 또는 소독 후 불출해 줄 것
- 세탁용수는 오염되지 않은 상수도, 지하수, 공업용수를 사용할 것. 끝.